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석준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232 발의연월일: 2021. 5. 20.

발 의 자: 송석준 · 유상범 · 이종배

박덕흠 • 배준영 • 이만희

태영호 · 성일종 · 유경준

유동수 의원(10인)

제안이유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제도가 도입 시행된 이후 정밀안전진단기관이 시행한 진단결과가 적정한지 평가할 수 있는 수단이 없고, 부실진단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처벌규정이 미비하여 관련 법령의 정비가 필요 함.

또한, 철도교통관제는 열차 감시·통제, 사고복구 등 철도교통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한 핵심적인 업무로서, 현재 「철도안전법」에 따른 관제자격증명을 보유한 사람이 수행하고 있음. 한편, 신규노선 확대 등으로인해 관제수요는 증가하나, 현 제도는 고속·일반·도시철도를 아우르는 단일자격으로 규정되어 있어, 운행특성에 맞는 면허취득 및 철도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관제사 수요에 대응하지 못하는 상황임.

이에, 정밀안전진단기관에서 시행한 정밀안전진단결과를 평가하여 부실진단을 사전예방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부실진단에 대한 처

벌규정을 명확히 하여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며, 단일자격으로 규정된 관제자격증명을 세분화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제도운영상 나타난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관제자격증명을 세분화할 수 있는 근거 신설(안 제21조의3) 현재 고속・일반・도시철도를 아우르는 단일자격증명을 세분화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함.
- 나. 관제자격증명 교육훈련·자격시험의 일부 면제(안 제21조의7 및 제2 1조의8)

관제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른 종류의 관제자격증명을 받으려는 경우 관제교육훈련 및 관제자격증명시험의 일부를 면제받을 수있는 근거를 신설함.

다. 부실진단에 대한 처벌규정 신설(안 제38조의13제3항제7호 및 같은 조제4항)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한 것으로 평가된 경우 처벌 규정을 신설함.

라. 진단결과에 대해 평가를 할 수 있는 근거 신설(안 제38조의14) 정밀안전진단기관의 부실진단을 방지하기 위해 진단결과를 평가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함.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3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제자격증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류별로 받아야 한다.

제21조의7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관제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른 종류의 관제자격증명을 받으려는 사람

제21조의8제3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관제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른 종류의 관제자격증명에 필요한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

제38조의12제5항 중 "전문기관(이하 "정밀안전진단기관"이라 한다)"을 "전문기관"으로 한다.

제38조의13제1항 중 "정밀안전진단기관"을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기관 (이하 "정밀안전진단기관"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제7호 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7. 제38조의14제1항에 따라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평가한 결과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한 것으로 평가된 경우
- ④ 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38조의14를 제38조의15로 하고, 제38조의1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의14(정밀안전진단 결과의 평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밀안전 진단기관의 부실 진단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38조의12에 따라 소유자 등이 정밀안전진단을 받은 경우 정밀안전진단기관이 수행한 해당 정밀안전진단의 결과를 평가할 수 있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밀안전진단기관에 제1항에 따른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정밀안전진단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대상,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1조의3(관제자격증명) (생 략)	제21조의3(관제자격증명) <u>①</u> (현
	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u><신 설></u>	② 제1항에 따른 관제자격증명
	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류별로 받아야 한다.
제21조의7(관제교육훈련) ① 관제	제21조의7(관제교육훈련) ①
자격증명을 받으려는 사람은 관	
제업무의 안전한 수행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관	
제업무에 필요한 지식과 능력을	
습득할 수 있는 교육훈련(이하	
"관제교육훈련"이라 한다)을 받	
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관제교육훈련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 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u><신 설></u>	3. 관제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으
	로서 다른 종류의 관제자격증
	명을 받으려는 사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21조의8(관제자격증명시험) ①	제21조의8(관제자격증명시험) ①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3	국토교	통부장	관은	다음	각
호의	니 어느	하나여	해당	강하는	사
람이]게는	국토교-	통부령]으로	정
하는	는 바에	따라 관	·제자	격증명	취시
험으] 일부	를 면제	할 수	: 있다	

- 1. (생략)
- 2. 「국가기술자격법」 제2조제 1호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으로 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철도관제 관련 분야의 자격을 가진 사람

<신 설>

④ (생 략)

제38조의12(철도차량 정밀안전진 단) ① ~ ④ (생 략)

- ⑤ 소유자등은 제38조의13제1 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 정한 전문기관(이하 "정밀안전 진단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 ⑥ (생략)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③
1. (현행과 같음)
<u><삭 제></u>

- 3. 관제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으 로서 다른 종류의 관제자격증 명에 필요한 시험에 응시하려 는 사람
- ④ (현행과 같음)

제38조의12(철도차량 정밀안전진 단) ① ~ ④ (현행과 같음)

(5)
<u>전문기관</u>

⑥ (현행과 같음)

제38조의13(정밀안전진단기관의 제38조의13(정밀안전진단기관의 지정 등) ① -----

원활한 정밀안전진단 업무 수행을 위하여 정밀안전진단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밀안전 진단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지 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 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 다.

1. ~ 6.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철도차량 정밀안전진
단기관(이하 "정밀안전진단기
<u>관"이라 한다)</u>
② (현행과 같음)
③
1. ~ 6. (현행과 같음)
7. 제38조의14제1항에 따라 정
밀안전진단 결과를 평가한 결
과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부실
하게 수행한 것으로 평가된
<u>경우</u>
④ 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
부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은 국토교통부렁으로 정한다.
제38조의14(정밀안전진단 결과의
여기 이 구두교토보자라이 저

밀안전진단기관의 부실 진단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38조의12에 따라 소유자등이 정밀안전진단 을 받은 경우 정밀안전진단기관이 수행한 해당 정밀안전진단의 결과를 평가할 수 있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밀안전 진단기관에 제1항에 따른 평가 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정밀안전진단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대상,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u>제38조의15</u> (현행 제38조의14와 같음)

제38조의14 (생략)